

국내 방화조사 현황 및 발전방향



글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소장

1. 국내 방화 조사 현황

가. 2009년도 화재 통계

2009년 화재통계는 전체적으로 화재 발생이 전년에 비해 약 4.7% 줄고 방화는 5.5%가 감소하였다. 이는 전체적인 화재 추이보다 방화의 감소율이 약간 높은 편이나 사회적으로 괄목할만한 변화로 보기에는 미미하다.

구분	계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가스 누출	화학적 요인	교통 사고	부주의	기타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방화 의심	미상
2009년	47,318	10,786	3,651	212	285	622	22,763	727	217	756	2,605	4,694
2008년	49,631	11,311	3,554	236	254	647	24,048	819	220	800	3,441	4,301
전년 건수	-2,313	-525	97	-24	31	-25	-1,285	-92	-3	-44	-836	393
대비 %	-4.7	-4.6	2.7	-10.2	12.2	-3.9	-5.3	-11.2	-1.4	-5.5	-24.3	9.1

〈표 1〉 2009년 화재발생 현황(소방방재청)

세부적으로 보면 부주의가 48.1%(22,763건)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전기적요인 22.8%(10,786건), 방화와 방화의심 7.1%(4,240건), 기계적요인 7.7%(3,361건), 교통사고 1.3%(622건), 화학적 요인 0.6%(285건), 자연적 요인 0.5%(217건), 가스누출 0.4%(212건) 순으로 발생한 결과를 보였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통계도 2008년 468명에서 2009년에는 409명으로 바랄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나. 방화의 조사

방화는 범행 의도를 갖고 불을 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방화의 입증을 위해서는 인위적 착화 행위의 물적 증거에 의한 증명력과 행위자의 의도에 대한 범의(犯意)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

해서는 대부분 방화의 행위자를 잡아야 가능하다. 물론 행위과정이 의심이 없이 설명 가능하도록 물적 증거가 현장상황을 대변해 주거나 CCTV에 기록, 또는 객관적 증명을 뒷받침할 만한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으면 범행 행위자의 확보 없이도 방화를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방화조사는 주로 수사기관에 의해 방화 수사로서 이루어진다. 현장에서의 물증과 통신, 목격자, 보험관계, 원한관계, 이해관계 등 수사기관의 권한과 직무가 아니면 밝히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따라서 화재현장에서 인위적 발화의 개연성이나 인화물질의 발견 등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은 방화의 개연성에 대한 충분한 의심을 주는 물증이지만 여전히 방화 여부를 판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특정 사람이 특정 시간·장소에 특정한 방법으로 착화 행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될만한 물증과 피관찰(CCTV, 목격자 진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방화 조사 시 문제점



[도표1] 방화수사의 문제점

실제로 충분한 물증이라 여기고 방화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여 기소에 부치더라도 무죄로 판결되는 화재가 많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무죄라는 의미보다는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측면이 많기는 하지만 방화 혐의에 대해 수사한 당국으로서의 사회 정의 차원이나 화재원인 규명 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해소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것들은 수사나 조사

하는 입장에서 보는 증거의 충분성과 다툼의 상대방이나 제3자의 재판부에서 보는 필요적 증거의 체감 정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판결에서는 민사와 형사 재판이 동일 사건에 대하여 정반대의 판결을 내놓은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에 주목할 것은 무죄 취지의 판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명확히 짚어 준 사실이며, 형사에서 보다 증거가 추가(또는 증거능력을 달리 판단)되어 우월한 증거로 과반 이상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에서는 유죄의 취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판결이든 완전한 법적 안정성을 갖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러한 재판에서 시사하는 바는 방화 수사나 조사자들이 어느 부분의 부족으로 방화 입증에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점이다. 또 하나의 우리나라 방화 수사의 문제점은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경찰)에서 방화 수사에 대한 비중이 수사관들이 끈기 있게 달려들기에는 인력이나 다른 강력사건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나 관련자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는 아직도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화와 전담화 등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2 방화조사의 발전 방향

가. 관의 의무

수사기관	소방기관	감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보존 책임 - 채증 증거 투명 전달/회수 - 비행사 사건 민간기회 부여 - 민간 전문기관 협력 양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압시 현장 훼손 최소화 - 화재조사 방화 요건 물증화 - 수사기관 호혜적 협조 - 민간 전문기관 협력 양성화 - 최초 현장 기록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능력 극대화 서비스 - 현장조사 협력 - 방화 기법 연구 및 제공 - 전문교육 지원

[도표 2] 기관별 화재수사 의무

방화는 분명 형사적 성격이 강한 만큼 수사기관에서 수사결과에 따라 방화여부가 결정된다. 민사에서의 정당한 다툼을 위해서도 형사의 수사나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만큼 관에서의 역할이 자체 업무 수행 외에도 국민 개개인의 권익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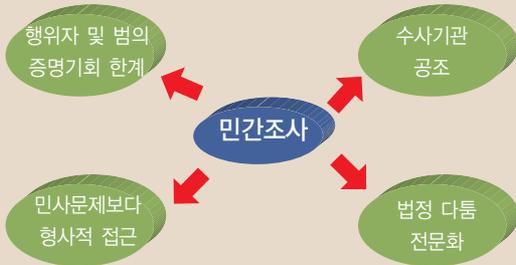
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특히 경찰, 소방, 감정기관 등은 화재현장에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권한과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는 개인이 가지는 특권이 아니라 국가의 위임 사무에 의한 역할을 생각하여 공공의 업무 외에 이후에 남겨질 수 있는 개개인의 조사 권한에 대하여도 존중하여 현장 보존과 증거의 습득, 유통, 관리, 보관, 반환 등에 투명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증거의 확보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조사자의 몫이며, 첫 현장에서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간접 증거들로 사건의 논쟁이 깊어져 가고 직접 물증에 의한 사건 해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과학적 조사나 수사, 분석을 매개로 하는 전문 조사관이나 감정기관은 과학이 목적이나 만능이 아님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이것이 과학적인 수단으로 정직하게 역할을 담당하여 정당한 조사 결과로 평가받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며 과학으로 오도되거나 남용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나. 민의 활성화

민사적 보강 조사를 위한 민간 조사기구 태동은 시기적으로 많이 무르익은 시점이라 생각된다. 오



[도표 2] 민간 조사기관의 역할과 문제점

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선의의 경쟁을 펼칠만한 수량의 기구를 합법화하거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형사 재판에서 부족한 증거가 민사에서 보강되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방화를 전적으로 형사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민간 분야의 활성화는 방화뿐만 아니라 일반 화재에서 역할을 넓힐 수 있다면 역으로 수사기관이나 감정기관에서 방화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질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민간기구라 할지라도 맹목적으로 의뢰자의 편에 서서 과학적 조사를 오도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이다. 민간 기구의 목적은 관의 조사가 미치지 않는 개인적 다툼이나 관의 조사 후에 민사적으로 남는 다툼에 참여하는 것, 때로는 관의 조사에 대한 대안이나 견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민·관의 협력방안

방화조사에 있어서는 민과 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관에서는 민간 기구의 활성화를 위해 엄정한 자격관리를 통해 충분한 조사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학술대회나 연구 활동을 교류하여 충분한 지적 공유공간을 선도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방화 조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사 및 조사 기관에서는 민간에서 선도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조하여 사회 범죄 척결 측면에서 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증거의 공유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수사기관이나 감정기관에서 각자의 업무 목적에서 끝났다고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관리 책임이 모호해 진다면 마지막에 다가오는 개개 국민의 권익 보호에 큰 허점을 남기게 된다. 폐기 종착역은 피해 당사자, 보험당사자, 이들의 위임을 받은 민의 조사 기구 등의 손에서 마지막 처리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발전이 필요하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민·관뿐만 아니라 관과 관의 협조 체계야말로 방화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남는다. 방화 수사가 경찰의 주체로 진행된다면 소방의 진압, 구조, 조사 등 초기 대응 자료는 경찰의 습득 자료보다 더욱 생생할 수 있고, 소방에서 안전이나 구조 등을 위한 현장 변형 상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보를 얻는 것은 말없는 현장을 몇 시간 뒤지는 것보다 큰 단서를 줄 수 있음을 상기하고 싶다. ☹